

수 신: 대구광역시의회의장

제 목: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조례안

위 조례안을 「지방자치법」 제76조 및 「대구광역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.

붙임: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

2024년 9월 30일

대표 발의의원:	대구광역시의회	김대현	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발의의원:	대구광역시의회	김정옥	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발의의원:	대구광역시의회	류종우	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발의의원:	대구광역시의회	박우근	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발의의원:	대구광역시의회	박창석	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발의의원:	대구광역시의회	윤권근	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발의의원:	대구광역시의회	이동욱	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발의의원:	대구광역시의회	이성오	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발의의원:	대구광역시의회	임인환	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발의의원:	대구광역시의회	황순자	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
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김대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074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4. 9. 30.

발의의원 : 김대현, 김정옥,
류종우, 박우근,
박창석, 윤권근,
이동욱, 이성오,
임인환, 황순자
의원 (10명)

1. 제안 이유

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화재를 예방하고, 피해 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관련 규정을 마련함

2. 주요 내용

-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을 규정(안 제4조)
- 안전시설의 보급 및 관리에 대해 규정(안 제5조 및 제6조)
- 관계인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(안 제6조 및 제7조)

3. 참고 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
-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전기자동차"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.
2. "충전시설"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.
3. "전용주차구역"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.
4. "안전시설"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.
5. "관계인"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대구광역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전기자동차 전

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화재 예방 및 대응) 시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
2.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
3.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
4.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
5.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안전시설의 보급 및 관리) ① 시장은 충전시설에 화재를 초기에 감지·진화할 수 있고 주변으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시설 보급 및 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설비를 지원할 때, 지원 대상별 설비의 효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6조(안전시설의 보급 및 관리)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관련 기관·단체·부서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(관계인에 대한 권고)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.

1.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·방지 기능 탑재
2.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
3. 옥외 등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
4.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주변 가까운 구역에 설치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협력체계 구축 등)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차량 제조사, 충전시설 관리 주체,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2조(기본이념)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, 모든 국민과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.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재난”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 - 가.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「우주개발 진흥법」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 - 나. 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·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, 「우주개발 진흥법」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,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,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와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